

남북협력기금의 재무제표

제 26 기 2016 년 1 월 1 일부터 2016 년 12 월 31 일까지

제 25 기 2015 년 1 월 1 일부터 2015 년 12 월 31 일까지

(별첨: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남북협력기금

목 차

| | |
|----------------------|---|
|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1 |
| 재 무 제 표 | |
| 재 정 상 태 표 | 4 |
| 재 정 운 영 표 | 6 |
| 순 자 산 변 동 표 | 7 |
| 주 석 | 8 |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남북협력기금
기금수탁관리자 귀하

2017년 4월 12일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

우리는 첨부된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동 재무제표는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정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정운영표 및 순자산변동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기금수탁관리자의 책임

기금수탁관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은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수행한 감사를 근거로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을 포함합니다. 절차의 선택은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인의 판단에 따릅니다. 감사인은 이러한 위험을 평가할 때,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기금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정한 표시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또한 재무제표의 전반적 표시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기금수탁관리자가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기금수탁관리자가 행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믿습니다.

감사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기금의 재무제표는 남북협력기금의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정상태와 동일로 종료된 보고기간의 재정운영결과 및 순자산의 변동을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강조사항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재무제표 이용자는 재무제표에 대한 다음의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북한조선무역은행 및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대여금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5 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금은 북한조선무역은행의 대여금 1,124,556 백만원 및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여금 1,374,393 백만원에 대해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및 제9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남북협력기금 세부회계처리기준에 의거하여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2월 31일 현재 상기 북한조선무역은행 대여금 및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대여금은 관련 차주의 특성상 향후 상황변화 등에 따라 회수가능성에 유의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 중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대여금의 경우 2016년 12월 31일 현재 대북경수로사업이 중단된 상태로서 향후 사업재개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동 대여금의 회수가능성에는 특히 유의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2) 경제협력사업보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2 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남북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한 보험계약은 대북사업의 특성상 일반적인 보험계약과는 달리 정치적 위험인 비상위험이 크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장래 보험금의 지급이 발생할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 44조 및 보험회계준칙에 의거한 보험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타사항

기금의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된 재무제표는 삼정회계법인이 감사하였으며, 동 감사인은 2016년 3월 29일에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삼 덕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장 영 철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2017년 4월 12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 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기금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재 정 상 태 표

제 26 기 2016 년 12 월 31 일 현재
제 25 기 2015 년 12 월 31 일 현재

남북협력기금

(단위: 원)

| 과 목 | 제 26(당) 기 | | 제 25(전) 기 | |
|-------------------|-------------------|-------------------|-------------------|-------------------|
| 자산 | | | | |
| I. 유동자산 | | 449,987,991,657 | | 770,669,171,375 |
| 1. 현금및현금성자산(주식 3) | | 70,117,004,722 | | 15,783,344,235 |
| 1) 현금및현금등가물 | - | | 15,783,344,235 | |
| 2) 국고금 | 70,117,004,722 | | | |
| 2. 단기금융상품(주식 3) | | 70,241,516,110 | | 253,594,435,210 |
| 1) 정기예금 | 241,516,110 | | 60,344,435,210 | |
| 2) 기타의단기금융상품 | 70,000,000,000 | | 193,250,000,000 | |
| 3. 단기투자증권(주식 4) | | 70,143,216,989 | | 330,780,326,044 |
| 1) 지분증권 | 70,143,216,989 | | 330,780,326,044 | |
| 4. 미수채권(주식 6,12) | | 39,438,778,775 | | 35,595,414,098 |
| 1) 미수이자수익 | 15,348,112,457 | | 13,298,226,094 | |
| 2) 기타의미수금 | 50,594,595,850 | | 50,355,302,060 | |
| 기타의미수금대손충당금 | (26,503,929,532) | | (28,058,114,056) | |
| 1) 기타의미수금대손충당금 | (26,503,929,532) | | (28,058,114,056) | |
| 5. 단기대여금(주식 5,6) | | 200,047,475,061 | | 134,915,651,788 |
| 1) 정부외단기대여금 | 218,857,899,845 | | 149,096,635,164 | |
| 단기대여금대손충당금 | (18,810,424,784) | | (14,180,983,376) | |
| 1) 단기융자금대손충당금 | (4,332,473,172) | | (3,923,460,427) | |
| 2) 단기융자보조원가충당금 | (14,477,951,612) | | (10,257,522,949) | |
| II. 투자자산 | | 2,675,839,846,602 | | 2,763,296,699,669 |
| 1. 장기금융상품(주식 3) | | - | | 10,000,000,000 |
| 1) 기타의장기금융상품 | - | | 10,000,000,000 | |
| 2. 장기대여금(주식 5,6) | | 2,656,337,233,370 | | 2,626,199,224,887 |
| 1) 정부외장기대여금 | 2,665,088,910,398 | | 2,635,264,498,932 | |
| 장기대여금대손충당금 | (8,751,677,028) | | (9,065,274,045) | |
| 1) 장기융자금대손충당금 | (5,889,591,970) | | (5,897,037,807) | |
| 2) 장기융자보조원가충당금 | (2,862,085,058) | | (3,168,236,238) | |
| 3. 장기투자증권(주식 4) | | 19,502,613,232 | | 127,097,474,782 |
| 1) 지분증권 | 19,502,613,232 | | 127,097,474,782 | |
| III. 일반유형자산(주식 7) | | 59,433,043,587 | | 60,598,045,472 |
| 1. 토지 | | 18,569,211,130 | | 18,741,277,790 |

| 과목 | 제 26(당) 기 | | 제 25(전) 기 | |
|--------------------|-------------------|-------------------|-------------------|-------------------|
| | | | | |
| 2. 건물 | | 39,604,044,854 | | 39,865,046,417 |
| 1) 건물 | 42,050,220,050 | | 41,239,703,190 | |
| 건물감가상각누계액 | (2,446,175,196) | | (1,374,656,773) | |
| 3. 구축물 | | 572,377,967 | | 602,635,833 |
| 1) 구축물 | 607,700,000 | | 607,700,000 | |
|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 (35,322,033) | | (5,064,167) | |
| 4. 집기·비품·차량운반구 | | 687,409,636 | | 578,568,572 |
| 1) 사무용기기 | 395,845,510 | | 221,994,680 | |
| 사무용기기감가상각누계액 | (75,214,405) | | (32,263,267) | |
| 2) 사무용집기 | 75,066,440 | | 119,448,440 | |
| 사무용집기감가상각누계액 | (15,694,911) | | (7,490,468) | |
| 3) 운반건설기계및차량 | 357,225,000 | | 283,200,000 | |
| 운반건설기계및차량감가상각누계액 | (64,645,723) | | (22,945,838) | |
| 4) 전기통신기기 | 17,973,000 | | 17,973,000 | |
| 전기통신기기감가상각누계액 | (3,145,275) | | (1,347,975) | |
| 5. 건설중인자산 | | - | | 810,516,860 |
| IV. 기타비유동자산 | | 72,050,093,054 | | 69,789,223,613 |
| 1. 장기미수채권(주식 6) | | 72,050,093,054 | | 69,789,223,613 |
| 1) 장기미수이자수익 | 72,050,093,054 | | 69,789,223,613 | |
| 자 산 총 계 | | 3,257,310,974,900 | | 3,664,353,140,129 |
| 부채 | | | | |
| I. 유동부채 | | 786,015,173,837 | | 229,128,172,631 |
| 1. 유동성장기차입부채(주식 8) | | 765,000,000,000 | | 207,000,000,000 |
| 1) 유동성장부내장기차입금 | 765,000,000,000 | | 207,000,000,000 | |
| 2. 기타유동부채 | | 21,015,173,837 | | 22,128,172,631 |
| 1) 미지급비용 | 21,015,173,837 | | 22,128,172,631 | |
| II. 장기차입부채 | | 1,534,500,000,000 | | 2,092,500,000,000 |
| 1. 장기차입금(주식 8) | | 1,534,500,000,000 | | 2,092,500,000,000 |
| 1) 정부내장기차입금 | 1,534,500,000,000 | | 2,092,500,000,000 | |
| 부 채 총 계 | | 2,320,515,173,837 | | 2,321,628,172,631 |
| 순자산 | | | | |
| I. 적립금및잉여금 | | 926,488,526,296 | | 1,320,288,422,004 |
| II. 순자산조정(주식 11) | | 10,307,274,767 | | 22,436,545,494 |
| 순 자 산 계 | | 936,795,801,063 | | 1,342,724,967,498 |
| 부채와 순자산계 | | 3,257,310,974,900 | | 3,664,353,140,129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재 정 운 영 표

제 26 기 2016 년 1 월 1 일부터 2016 년 12 월 31 일까지
제 25 기 2015 년 1 월 1 일부터 2015 년 12 월 31 일까지

남북협력기금

(단위:원)

| 과 목 | 제 26 (당) 기 | | | 제 25 (전) 기 | | |
|-------------------------------------|-----------------|------------------|-----------------|----------------|------------------|------------------|
| | 총원가 | 수익 | 순원가 | 총원가 | 수익 | 순원가 |
| I. 프로그램순원가(주석 9, 12) | 464,938,855,215 | (10,101,096,112) | 454,837,759,103 | 62,233,690,190 | (10,422,545,334) | 51,811,144,856 |
| 1. 통일정책프로그램 | 5,038,040,170 | (406,990) | 5,037,633,180 | 4,694,224,338 | - | 4,694,224,338 |
| 2. 남북사회문화교류프로그램 | 2,314,470,824 | (62,337,360) | 2,252,133,464 | 6,453,060,743 | (248,458,730) | 6,204,602,013 |
| 3. 인도적문제해결프로그램 | 1,536,079,727 | (320,339,550) | 1,215,740,177 | 5,513,532,860 | (5,461,070) | 5,508,071,790 |
| 4. 대북인도지원프로그램 | - | - | - | 12,788,208,146 | (60,130,770) | 12,728,077,376 |
| 5. 남북경제협력프로그램 | 401,435,956,699 | (8,124,417,250) | 393,311,539,449 | 14,450,992,164 | (8,446,361,805) | 6,004,630,359 |
| 6. 개성공단지원프로그램 | 54,614,307,795 | (1,593,594,962) | 53,020,712,833 | 18,333,671,939 | (1,662,132,959) | 16,671,538,980 |
| II. 관리운영비 | | | 93,047,930 | | | 98,704,090 |
| 1. 경비 | | | 93,047,930 | | | 98,704,090 |
| (1)외주용역비 | | | 93,047,930 | | | 98,704,090 |
| III. 비배분비용 | | | 91,738,623,454 | | | 97,625,324,742 |
| 1. 이자비용 | | | 90,108,870,416 | | | 92,625,410,005 |
| 2. 평가손실 | | | 255,543,748 | | | 10,968,776 |
| 3. 자산처분손실 | | | 1,368,226,530 | | | 675,636,050 |
| 4. 기타비용(주 10) | | | 5,982,760 | | | 4,313,309,911 |
| IV. 비배분수익 | | | 60,465,127,715 | | | 105,779,088,466 |
| 1. 이자수익 | | | 4,517,730,169 | | | 8,143,471,788 |
| 2. 평가이익 | | | 35,924,297,881 | | | 71,927,665,971 |
| 3. 자산처분이익 | | | 18,351,165,502 | | | 830,655,955 |
| 4. 기타수익(주 10) | | | 1,671,934,163 | | | 24,877,294,752 |
|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 | | 486,204,302,772 | | | 43,756,085,222 |
| VI. 비교환수익등 | | | (95,592,936) | | | (18,802,383,357) |
| 1. 기타재원조달및이전 | | | (95,592,936) | | | (18,802,383,357) |
| VII. 재정운영결과(V-VI) | | | 486,299,895,708 | | | 62,558,468,579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순자산변동표

제 26 기 2016 년 1 월 1 일부터 2016 년 12 월 31 일까지
제 25 기 2015 년 1 월 1 일부터 2015 년 12 월 31 일까지

남북협력기금

(단위: 원)

| 과 목 | 기본순자산 | 적립금및잉여금 | 순자산조정 | 합계 |
|--------------------------|-------|-------------------|------------------|-------------------|
| I. 기초순자산(전기초) | - | 1,289,644,290,583 | 5,200,282,758 | 1,294,844,573,341 |
| 1. 보고금액 | - | 1,289,644,290,583 | 5,200,282,758 | 1,294,844,573,341 |
| II. 재정운영결과 | - | 62,558,468,579 | - | 62,558,468,579 |
| III. 조정항목 | - | 93,202,600,000 | 17,236,262,736 | 110,438,862,736 |
| 1. 투자증권평가손실(주식 4,11) | - | - | 9,183,184,478 | 9,183,184,478 |
| 2. 자산재평가이익(주식 7,11) | - | - | 8,053,078,258 | 8,053,078,258 |
| 3. 기타순자산의증감 | - | 93,202,600,000 | - | 93,202,600,000 |
| IV. 기말순자산(전기말)(I-II+III) | - | 1,320,288,422,004 | 22,436,545,494 | 1,342,724,967,498 |
| I. 기초순자산(당기초) | - | 1,320,288,422,004 | 22,436,545,494 | 1,342,724,967,498 |
| 1. 보고금액 | - | 1,320,288,422,004 | 22,436,545,494 | 1,342,724,967,498 |
| II. 재정운영결과 | - | 486,299,895,708 | - | 486,299,895,708 |
| III. 조정항목 | - | 92,500,000,000 | (12,129,270,727) | 80,370,729,273 |
| 1. 투자증권평가이익(주식 4,11) | - | - | (12,208,230,247) | (12,208,230,247) |
| 2. 자산재평가이익(주식 7,11) | - | - | 78,959,520 | 78,959,520 |
| 3. 기타순자산의증감 | - | 92,500,000,000 | - | 92,500,000,000 |
| IV. 기말순자산(당기말)(I-II+III) | - | 926,488,526,296 | 10,307,274,767 | 936,795,801,063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주 석

제 26 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제 25 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남북협력기금

1. 기금의 개요

남북협력기금(이하“기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0년 8월 1일 제정공포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1991년 대한민국정부가 25,000백 만원을 출연하여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남북협력기금법 제7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장이 기금수탁관리자로 지정되어 수행되고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처리방법

기금의 재무제표는 2009 회계연도부터 적용된 국가회계법 제 11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회 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기금이 채택하고 있는 중요한 회계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의 인식

기금의 교환수익은 수익창출 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하고 있으며, 비교환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치금 및 대여금 등에 대한 이자수익은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손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자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2) 현금및현금성자산

기금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보통예금 및 현금성자산 등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금성자산이란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 또는 상환일이 3 개월 이내인 것을 말합니다..

(3) 장·단기금융상품

기금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을 장·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금융상품의 장단기의 구분은 만기가 재정상태표일 현재 1년 이내 또는 1년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릅니다.

(4) 유가증권

기금은 유가증권에 대해 유가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취득원가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상태표일 현재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거나 1년 이내 처분예정인 유가증권은 단기투자증권으로 분류하며, 재정상태표일 현재 만기가 1년을 초과하거나 1년 후에 처분 예정인 유가증권은 장기투자증권으로 분류하며, 분류의 적정성은 재정상태표일마다 재검토합니다.

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며 지분증권과 기타장.단기투자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투자목적의 장.단기투자증권의 경우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합니다. 투자목적이란 투자증권을 매매차익목적으로 보유함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금액은 순자산변동표상 순자산 조정항목으로 인식합니다.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채무증권의 상각후취득원가 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감액손실을 인식할 것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감액손실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는 재정상태표일마다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감액이 필요하지 않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하여 감액손실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감액손실 금액은 재정운영표상 원가에 반영합니다.

(5) 대여금 등의 평가

기금은 대여금 등의 잔액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대여금 등의 잔액에 대하여 차주, 보증인, 유가증권 발행인, 보증의뢰인 등 관련 거래처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역 등을 감안하여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하였습니다. 기금은 상기 기준에 따라 분류된 대여금에 대해서 각각 0.85% 이상(일부 업종은 0.9% 이상), 7% 이상, 20% 이상, 50% 이상 및 100% 상당액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회수가 예상되는 담보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대손충당금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은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통일부고시) 제58조에 따라 남북한 당국간 사업,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대한 채권 및 기타 통일부장관이 해당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6) 용자보조원가충당금

기금은 유효이자율(일반적으로 국채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용자를 제공하는 사업은 용자회계준칙을 적용하여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용자금의 원금에서 용자금 회수가능가액의 순 현재가치를 차감하여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을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되는 할인율은 용자금과 만기가 유사한 국채할인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은 매년 재정상태표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용자금의 평가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한 금액은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조선무역은행 및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용자금 등에 대해서 차주의 특수성으로 인해 미래현금흐름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 58조 및 제 9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남북협력기금 세부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용자

보조원가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7) 일반유형자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합니다. 다만,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 및 취득부대비용을 취득원가로 합니다.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유형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서 당해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에 가산하고, 이 외의 지출에 대하여는 수익적 지출로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유형자산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며, 사용수익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자산에 차감하여 표시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일반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및 추정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추정내용연수 | 감가상각방법 |
|-----------|----------|--------|
| 건물 | 20 ~ 40년 | 정액법 |
| 사무용기기 | 4 ~ 11년 | 정액법 |
| 사무용집기 | 8 ~ 10년 | 정액법 |
| 운반건설기계및차량 | 5 ~ 9년 | 정액법 |
| 전기통신기기 | 10년 | 정액법 |

(8) 자산의 감액 등

기금은 자산의 물리적인 손상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을 그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의 과목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합니다. 다만, 감액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회복되는 경우에는 감액 전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감액손실환입 과목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합니다.

(9) 우발상황

기금은 지출의 시기 및 금액은 불확실하지만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재정상태표일 현재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손실금액을 장기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상태표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지 않거나, 우발손실의 발생은 확실하지만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상황의 내용과 우발손실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주석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발이익의 발생이 확실하고 그 이익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우발상황의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0) 외화자산의 환산

기금은 화폐성 외화자산을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서울외국환중개(주)가 고시한 미달러화 기준환율

(당기말 ₩1,208.5/USD) 및 재정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환산손익을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1) 출연금

기금이 수령하는 정부 또는 민간으로부터의 출연금은 기금설치 목적을 위해 지출되는 재원의 용도에 따라 달리 회계처리하며,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 또는 순자산변동표 조정항목의 기타순자산의 증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 재원의 용도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주된 용도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을 운영비 등에 충당하여 조성된 재원이 소진되는 경우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으로 처리하며, 주로 자산 또는 부채의 변화를 가져오는 용도(자산매입, 대여 등)로 사용되어 조성된 재원의 원본이 유지되는 경우 순자산변동표의 조정항목에 기타순자산의 증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2) 위탁수수료

기금은 남북협력기금법 제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에 운용 및 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통일부와 협의된 위탁수수료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지급하고 프로그램 원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등

2016년과 2015년 12월 31일 현재 기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연이자율(%) | 금 액 | | 금융기관 |
|------------|-------------|----------------|----------------|----------|
| | 2016.12.31 | 2016 | 2015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
| MMDA | 1.10 | 925 | 746 | KEB 하나은행 |
| 정기예금 | 1.84 | 1,997 | - | 농협은행 |
| MMT | 2.05 ~ 2.07 | 10,017 | 5,018 | 하나금융투자 외 |
| MMF | 실적배당 | 7,041 | 2 | 삼성자산운용 외 |
| MMW | 1.88 ~ 2.50 | 50,137 | 10,017 | 신한금융투자 외 |
| | | <u>70,117</u> | <u>15,783</u> | |
| 단기금융상품 : | | | | |
| 정기예금 | 1.91 | 242 | 60,344 | 농협은행 |
| MMT | 2.10 ~ 3.60 | 35,000 | 138,250 | 교보증권 외 |
| MMW | 1.75 ~ 2.57 | 35,000 | 55,000 | 케이비증권 외 |
| | | <u>70,242</u> | <u>253,594</u> | |
| 장기금융상품 : | | | | |
| MMT | - | - | 10,000 | |
| | | - | <u>10,000</u> | |
| | | <u>140,359</u> | <u>279,377</u> | |

4. 장·단기투자증권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금의 장·단기투자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6 | | | 2015 | | |
|----------|---------------|---------------|---------------|----------------|----------------|----------------|
| | 취득원가 | 공정가액 | 장부가액 | 취득원가 | 공정가액 | 장부가액 |
| 단기투자증권 : | | | | | | |
| 지분증권 | 67,400 | 70,143 | 70,143 | 314,424 | 330,780 | 330,780 |
| 채무증권 | - | - | - | - | - | - |
| | <u>67,400</u> | <u>70,143</u> | <u>70,143</u> | <u>314,424</u> | <u>330,780</u> | <u>330,780</u> |
| 장기투자증권 : | | | | | | |
| 지분증권 | 20,071 | 19,503 | 19,503 | 129,071 | 127,097 | 127,097 |
| 채무증권 | - | - | - | - | - | - |
| | <u>20,071</u> | <u>19,503</u> | <u>19,503</u> | <u>129,071</u> | <u>127,097</u> | <u>127,097</u> |
| | <u>87,471</u> | <u>89,646</u> | <u>89,646</u> | <u>443,495</u> | <u>457,877</u> | <u>457,877</u> |

5. 대여금

(1) 기금은 남북한의 상호교류 및 경제협력사업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의 촉진과 민족공동체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용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자대상은 남북간 경제교류사업을 시행하는 남한주민 및 남북 당국간 합의된 교류협력사업 등에 대한 북한당국 등입니다.

(2) 2016년과 2015년 12월 31일 현재 용자사업의 규모 및 이자율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연이자율(%) | 금 액 | |
|-----------|------------|------------------|------------------|
| | 2016.12.31 | 2016 | 2015 |
| 용자금 | 0.0 ~ 5.9 | 2,883,947 | 2,784,361 |
| 용자보조원가충당금 | | (17,340) | (13,426) |
| 대손충당금 | | (10,222) | (9,820) |
| | | <u>2,856,385</u> | <u>2,761,115</u> |

(3) 2016년과 2015년 12월 31일 현재 기금의 정부의 장·단기대여금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내 용 | 연이자율(%) | 금 액 | |
|--------------|-------------------|------------|------------------|------------------|
| | | 2016.12.31 | 2016 | 2015 |
| 정부의 단기대여금 | 실적한도대출 | 1.0 ~ 3.5 | 5,631 | 6,293 |
| | 반출자금대출 | 4.1 ~ 4.9 | 99 | 393 |
| | 특별경제협력자금대출 | 1.5 ~ 3.0 | 170,297 | 101,985 |
| |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 1.0 ~ 5.9 | 23,483 | 12,155 |
| | 민족공동체회복지원자금대출 | 1.0 | 17,443 | 11,157 |
| | 외화표시민족공동체회복지원자금대출 | 0.0 | 1,905 | 17,114 |
| | | | <u>218,858</u> | <u>149,097</u> |
| 정부의 장기대여금 |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 1.0 ~ 5.9 | 119,053 | 131,171 |
| | 민족공동체회복지원자금대출 | 1.0 | 47,086 | 50,620 |
| | 경수로민족공동체회복지원자금대출 | 0.0 | 1,374,393 | 1,374,393 |
| | 외화표시민족공동체회복지원자금대출 | 1.0 | 1,124,557 | 1,079,080 |
| | | | <u>2,665,089</u> | <u>2,635,264</u> |
| | | | <u>2,883,947</u> | <u>2,784,361</u> |

(4) 2016년 12월 31일 현재 기금의 정부외장·단기대여금의 대출종류별 정부승인금액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종류 | 차주별 | 정부승인금액 | 집행금액 | (단위: 천USD, 백만원) | |
|---------------------|------------|--------------------|--------------------|-------------------|--------------------|
| | | | | 회수금액 | 대출잔액 |
| 대북식량차관(2000) | 북한조선무역은행 | USD 100,000 | USD 88,355 | - | USD 88,355 |
| 대북식량차관(2002) | 북한조선무역은행 | 110,000 | 106,000 | - | 106,000 |
| 대북식량차관(2003) | 북한조선무역은행 | 110,000 | 106,000 | - | 106,000 |
| 대북식량차관(2004) | 북한조선무역은행 | 124,000 | 117,986 | - | 117,986 |
| 대북식량차관(2005) | 북한조선무역은행 | 155,000 | 150,000 | - | 150,000 |
| 대북식량차관(2007) | 북한조선무역은행 | 154,000 | 151,701 | - | 151,701 |
| 대북자재장비차관(2002) | 북한조선무역은행 | 45,000 | 42,887 | - | 42,887 |
| 대북자재장비차관(2003) | 북한조선무역은행 | 60,000 | 68,051 | - | 68,051 |
| 대북자재장비차관(2005) | 북한조선무역은행 | 28,500 | 21,959 | - | 21,959 |
| 대북경공업원자재차관(2007) | 북한조선무역은행 | 80,000 | 80,000 | 2,400 | 77,600 |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2013)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 13,000 | 13,000 | 11,423 | 1,577 |
| | | <u>USD 979,500</u> | <u>USD 945,939</u> | <u>USD 13,823</u> | <u>USD 932,116</u> |
| 대북경수로사업 대출 |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 3,542,000 | 1,374,393 | - | 1,374,393 |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2004)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 26,100 | 22,921 | 12,228 | 10,693 |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2005)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 897 | 801 | 401 | 400 |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2007)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 10,400 | 9,256 | 1,851 | 7,405 |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2008)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 15,900 | 14,309 | 1,218 | 13,091 |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2009)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 8,910 | 7,444 | 155 | 7,289 |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2010)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 3,768 | 3,703 | 199 | 3,504 |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2011)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 5,999 | 5,973 | 446 | 5,527 |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2012)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 3,338 | 3,338 | 241 | 3,097 |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2013)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 5,068 | 4,810 | 472 | 4,338 |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2014)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 3,289 | 3,289 | 411 | 2,878 |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2015)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 4,165 | 3,556 | 449 | 3,107 |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2016)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 3,300 | 3,200 | - | 3,200 |
| 반출입 및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 | 한국관광공사 외 | <u>403,456</u> | <u>367,716</u> | <u>49,153</u> | <u>318,563</u> |
| | | <u>4,036,590</u> | <u>1,824,710</u> | <u>67,225</u> | <u>1,757,485</u> |
| | | <u>USD 979,500</u> | <u>USD 945,939</u> | <u>USD 13,823</u> | <u>USD 932,116</u> |
| | | <u>4,036,590</u> | <u>1,824,710</u> | <u>67,225</u> | <u>1,757,485</u> |

2016년 12월 31일 현재 외화표시 정부외장·단기대여금의 원화환산액은 1,126,462백만원입니다.

(5)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금의 정부의 장·단기대여금에 대한 용자보조원가충당금 및 대손충당금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6 | | |
|----------------------------------|------------------|---------------|---------------|
| | 정부의 장·단기대여금 | 용자보조원가충당금 | 대손충당금 |
| 대북식량및자재장비등 차관(*) | 1,124,556 | - | - |
| 대북경수로사업 본공사비 대출(*) | 1,374,393 | - | - |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 | 66,435 | 3,653 | - |
| 반출입 및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 (실적한도대출 포함) | 318,563 | 13,687 | 10,222 |
| | <u>2,883,947</u> | <u>17,340</u> | <u>10,222</u> |

| 구 분 | 2015 | | |
|----------------------------------|------------------|---------------|--------------|
| | 정부의 장·단기대여금 | 용자보조원가충당금 | 대손충당금 |
| 대북식량및자재장비등 차관(*) | 1,090,592 | - | - |
| 대북경수로사업 본공사비 대출(*) | 1,374,393 | - | - |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 | 67,379 | 4,178 | - |
| 반출입 및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 (실적한도대출 포함) | 251,997 | 9,248 | 9,820 |
| | <u>2,784,361</u> | <u>13,426</u> | <u>9,820</u> |

(*) 2016년 12월 31일 현재 기금은 대북식량및자재장비등 차관 및 대북경수로사업 본공사비 대출 2,498,949백만원(전기: 2,464,985백만원)에 대하여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 58조 및 제 9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남북협력기금 세부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2월 31일 현재 북한조선무역은행 대여금 1,124,556백만원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대여금 1,374,393백만원은 관련 차주의 특성상 향후 상황변화에 따라 회수가능성에 유의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이 중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대여금의 경우 2016년 12월 31일 현재 대북경수로사업이 중단된 상태로서 향후 사업재개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동 대여금의 회수가능성에는 특히 유의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6) 기금이 당기와 전기 중 용자사업과 관련하여 재정운영표에 용자보조비용 및 대손상각비로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6 | 2015 |
|--------|--------------|--------------|
| 용자보조비용 | 7,237 | 3,101 |
| 대손상각비 | 1,138 | 4,746 |
| | <u>8,375</u> | <u>7,847</u> |

6. 외화자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금의 외화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USD, 백만원)

| 계정과목 | 외화종류 | 2016.12.31 | | 2015.12.31 | |
|--------|------|----------------|------------------|----------------|------------------|
| | | 외화금액 | 원화환산액 | 외화금액 | 원화환산액 |
| 미수채권 | USD | - | - | - | - |
| 단기대여금 | USD | 1,577 | 1,906 | 4,780 | 5,603 |
| 장기미수채권 | USD | 53,381 | 64,510 | 53,381 | 62,562 |
| 장기대여금 | USD | 930,539 | 1,124,556 | 930,539 | 1,090,592 |
| | | <u>985,497</u> | <u>1,190,972</u> | <u>988,700</u> | <u>1,158,757</u> |

7. 일반유형자산

(1) 당기와 전기 중 기금의 일반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6 | | | | |
|-----------|---------------|--------------|----------------|----------------|---------------|
| | 기초 | 취득 | 상각 | 기타증감 | 기말 |
| 토지 | 18,741 | - | - | (172) | 18,569 |
| 건물 | 39,865 | 810 | (1,071) | - | 39,604 |
| 구축물 | 603 | - | (31) | - | 572 |
| 사무용기기 | 190 | 259 | (43) | (85) | 321 |
| 사무용집기 | 112 | 4 | (8) | (49) | 59 |
| 운반건설기계및차량 | 260 | 37 | (42) | 37 | 292 |
| 전기통신기기 | 17 | - | (2) | - | 15 |
| 건설중인건물 | 810 | - | - | (810) | - |
| | <u>60,598</u> | <u>1,110</u> | <u>(1,197)</u> | <u>(1,079)</u> | <u>59,432</u> |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5 | | | | |
|-----------|---------------|--------------|----------------|--------------|---------------|
| | 기초 | 취득 | 상각 | 기타증감 | 기말 |
| 토지 | 10,198 | - | - | 8,543 | 18,741 |
| 건물 | 40,896 | - | (1,399) | 368 | 39,865 |
| 구축물 | - | 608 | (5) | - | 603 |
| 사무용기기 | 127 | 93 | (30) | - | 190 |
| 사무용집기 | 42 | 77 | (7) | - | 112 |
| 운반건설기계및차량 | 94 | 188 | (22) | - | 260 |
| 전기통신기기 | - | 18 | (1) | - | 17 |
| 건설중인건물 | - | 810 | - | - | 810 |
| | <u>51,357</u> | <u>1,794</u> | <u>(1,464)</u> | <u>8,911</u> | <u>60,598</u> |

(2) 기타증감에는 당기 토지재평가이익 79백만원과 토지재평가손실 251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건설중인 자산의 건물 대체액 810백만원과 사무용기기 등의 감소액 97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일반유형자산의 자산재평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 | |
|-----------|----------------------|---------|-------------|------------|
| 구분 | 재평가액 추정방법 및 유의적가정 | 재평가액(A) | 재평가전장부가액(B) | 재평가손익(A-B) |
| 토지 | 공시지가 | 18,569 | 18,741 | (172) |

8. 차입금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금의 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 | |
|----------------------------------|------|-------------|-------------------------------------|-------------------------------------|
| 구분 | 차입처 | 연이자율(%) | 금액 | |
| | | 2016.12.31 | 2016 | 2015 |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차감: 1년이내상환일도래분) | 한국은행 | 1.48 ~ 4.88 | 2,299,500 (765,000) 1,534,500 | 2,299,500 (207,000) 2,092,500 |

(2) 당기말 현재 기금의 차입금의 연도별 상환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
| 상환연도 | 금액 |
| 2017 년 | 765,000 |
| 2018 년 | 278,400 |
| 2019 년 | 203,000 |
| 2020 년 | 548,600 |
| 2021 년 | 237,000 |
| 2022 년 이후 | 267,500 |
| | 2,299,500 |

9. 프로그램순원가

(1) 당기와 전기 중 기금의 재정운영표에 계상되어 있는 프로그램총원가를 발생성격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6 | | | | | |
|---------|--------------|--------------|--------------|----------------|---------------|----------------|
| | 통일정책 | 남북사회 문화교류 | 인도적 문제해결 | 남북 경제협력 | 개성공단 지원 | 합 계 |
| 업무대행수수료 | 18 | 10 | 10 | 1,655 | 585 | 2,278 |
| 기타용역비 | 2 | 1 | 1 | 155 | 55 | 214 |
| 기타민간보조비 | 3,821 | 2,303 | 1,525 | 96,609 | 53,531 | 157,789 |
| 대손상각비 | - | - | - | 1,138 | - | 1,138 |
| 유자보조비용 | - | - | - | 6,794 | 443 | 7,237 |
| 감가상각비 | 1,197 | - | - | - | - | 1,197 |
| 보험금지급비 | - | - | - | 295,085 | - | 295,085 |
| | <u>5,038</u> | <u>2,314</u> | <u>1,536</u> | <u>401,436</u> | <u>54,614</u> | <u>464,938</u> |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5 | | | | | | |
|---------|--------------|--------------|--------------|---------------|---------------|---------------|---------------|
| | 통일정책 | 남북사회 문화교류 | 인도적 문제해결 | 대북 인도지원 | 남북 경제협력 | 개성공단 지원 | 합 계 |
| 업무대행수수료 | 243 | 312 | 267 | 617 | 353 | 1,023 | 2,815 |
| 기타용역비 | - | 6 | 6 | 44 | 46 | - | 102 |
| 기타민간보조비 | 2,987 | 6,135 | 5,241 | 12,127 | 6,859 | 16,580 | 49,929 |
| 대손상각비 | - | - | - | - | 4,746 | - | 4,746 |
| 유자보조비용 | - | - | - | - | 2,370 | 731 | 3,101 |
| 감가상각비 | 1,464 | - | - | - | - | - | 1,464 |
| 보험금지급비 | - | - | - | - | 77 | - | 77 |
| | <u>4,694</u> | <u>6,453</u> | <u>5,514</u> | <u>12,788</u> | <u>14,451</u> | <u>18,334</u> | <u>62,234</u> |

(2) 당기와 전기 중 기금의 재정운영표에 계상되어 있는 프로그램 총수익을 발생성격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6 | | | | | 합 계 |
|-----------------|------|--------------|-------------|------------|------------|--------|
| | 통일정책 | 남북사회 문화교류 | 인도적 문제해결 | 남북 경제협력 | 개성공단 지원 | |
| 정부외융자금 이자수익 | - | - | - | 4,374 | 1,402 | 5,776 |
| 보험수익 | - | - | - | 808 | - | 808 |
| 대손충당금환입 | - | - | - | 1,874 | 2 | 1,876 |
| 융자보조원가 충당금환입 | - | - | - | 853 | 190 | 1,043 |
| 잡이익 | 1 | 62 | 320 | 215 | - | 598 |
| | 1 | 62 | 320 | 8,124 | 1,594 | 10,101 |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5 | | | | | 합 계 |
|-----------------|--------------|-------------|------------|------------|------------|--------|
| | 남북사회 문화교류 | 인도적 문제해결 | 대북 인도지원 | 남북 경제협력 | 개성공단 지원 | |
| 정부외융자금 이자수익 | - | - | - | 5,856 | 1,185 | 7,041 |
| 보험수익 | - | - | - | 2,137 | - | 2,137 |
| 대손충당금환입 | - | - | - | 81 | 4 | 85 |
| 융자보조원가 충당금환입 | - | - | - | 308 | 86 | 394 |
| 잡이익 | 249 | 6 | 60 | 64 | 387 | 766 |
| | 249 | 6 | 60 | 8,446 | 1,662 | 10,423 |

10. 기타비용 및 기타수익

(단위: 백만원)

| 구 분 | 계 정 과 목 | 2016 | 2015 |
|-------------|----------|-------|--------|
| 기타비용(비배분비용) | 전기오류수정손실 | 6 | 4,313 |
| 기타수익(비배분수익) | 잡이익 | 172 | 242 |
| | 전기오류수정이익 | 1,500 | 24,635 |
| | | 1,672 | 24,877 |

11. 순자산조정

당기와 전기 중 기금의 순자산조정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6 | | | | 2015 | | | |
|-----------------|---------|-------|----------|--------|---------|--------|-------|---------|
| | 당기초 | 증가 | 감소 | 당기말 | 전기초 | 증가 | 감소 | 전기말 |
| 투자증권평가손익 | | | | | | | | |
| 단기투자증권 | | | | | | | | |
| 지분증권 | 16,356 | 1,581 | 15,194 | 2,743 | 7,306 | 9,578 | 528 | 16,356 |
| 장기투자증권 | | | | | | | | |
| 지분증권 | (1,973) | 1,719 | 314 | (568) | (2,106) | (518) | (651) | (1,973) |
| 소 계 | 14,383 | 3,300 | 15,508 | 2,175 | 5,200 | 9,060 | (123) | 14,383 |
| 자산재평가이익 | | | | | | | | |
| 일반유형자산 재평가이익 | 8,053 | 79 | - | 8,132 | - | 8,053 | - | 8,053 |
| 총 계 | 22,436 | 3,379 | (15,508) | 10,307 | 5,200 | 17,113 | (123) | 22,436 |

12. 우발상황 및 약정사항

(1) 기금은 북한에 투자하는 남한기업에게 북한 당국의 몰수, 사업중단 등 경영외적 사유로 투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 경제협력사업보험계약을 개성공단 투자기업과 체결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현재 보험계약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종 류 | 회 사 명 | 계약확정금액 | 계약미확정금액 |
|----------|----------------|--------|---------|
| 경제협력사업보험 | 한국전력공사 외 7개 업체 | 14,094 | 4,059 |

(2) 남북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한 보험계약은 대북사업의 특성상 일반적인 보험계약과는 달리 정치적 위험인 비상위험이 크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장래 보험금의 지급이 발생할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 44조 및 보험회계준칙(기획재정부고시)에 의거한 보험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2013년 4월 개성공단의 사업중단으로 인해 기금은 2013년 8월 7일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에 따라 59개 업체에 1,768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9월 제2차 남북공동위원회의 합의로 개성공단이 재가동됨에 따라 기금은 경제협력사업보험 취급기준(통일부고시)에 의거 보험금 수령업체에게 보험금의 반납을 요청하였으며 2016년 12월 31일 현재 1,308억원을 회수하였습니다. 기금은 2016년 12월 31일 현재 상기의 미회수한 보험금 잔액을 포함한 506억원에 대하여 기타의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금은 경험보험 약관 및 보험계약자와 체결한 약정서에 따라 보험금 미반납 업체의 개성공단 내 재산에 대한 대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금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 따라 회수가 예상되는 담보금액을 제외한 미수금 전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4) 당기말 현재 기금이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총 1건으로서 소송금액은 45백만원이며 주요 소송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류중인 소송사건에 대하여 소송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 (단위: 원) | | | | | |
|----------|---------|---------|-------|------------|--------|
| 계류법원 | 원고 | 피고 | 사건내용 | 소송가액 | 진행상황 |
| 서울중앙지방법원 | (주)에스엔지 | 한국수출입은행 | 부당이득금 | 45,042,730 | 2심 진행중 |